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안 번호	1802
----------	------

발의년월일 : 2009. 2. 5.
발 의 자 : 이민근의원 외 4인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가.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헌혈의 권장)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입법예고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헌혈사업실적(대한적십자사)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 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02
----------	------

제안년월일 : 2009. 3. 4.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부정확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목적 중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를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로 수정함.(안제1조)
- 비밀준수의 의무 조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수정함(안8조)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를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의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u>	<u>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u>
제1조(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삭제)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2조	제2조(원안과 같음)
제3조	제3조(원안과 같음)
제4조	제4조(원안과 같음)
제5조	제5조(원안과 같음)
제6조	제6조(원안과 같음)
제7조	제7조(원안과 같음)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제9조(원안과 같음)